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룡시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임무)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·정비
2.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 유도
3.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
4. 법 제23조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
5.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

제3조 (조직) ①수방단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·리별로 당해 지역주민으로 조직하되 단장 1인을 포함한 단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.

1.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
2. 고교생 및 대학생
3. 경찰관 및 군인
4.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

제4조 (단장)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면·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.

제5조 (편성)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본부 및 경계반 : 10명 내외
 - 가. 주민 대피 유도
 - 나.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
 - 다.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
 - 라.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
 - 마.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은 업무

2. 복구반 : 30명 내외

- 가.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·정비
- 나. 피해시설물의 긴급 복구
- 다.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
- 라. 재해지구의 정리·정돈

3. 구호반 : 10명 내외

- 가.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
- 나. 사망자, 부상자 등 인명 피해자 조치
- 다.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 실시
- 라.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

제6조 (소집해제 및 기록보존) ①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 (시행규칙)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수방단 편성 및 소집 현황

[illegible]